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1. . . (제 회)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과장
제출 연월일	. . .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1.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전 조문 정비)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완화(안 제5조)
 -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은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규정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제출 : 예산편성 전 → 예산의결 전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시 : 추경편성 전 → 추경의결 전

○ 대부료 특례 감액율 조정(안 제34조)

- 대부 목적에 따른 세분화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

○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조정(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 완화(안 제40조)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 확대
- 종전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 변경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3. 개정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없음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을 “영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으로 하고, 제24조,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41조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7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 을 “지식산업센터” 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를 “주거용 건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을 “상시종업원” 으로, “해당 지역” 을 “경상북도 안” 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 을 “(채광물채취료 등)”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영 제19조” 를 “영 제35조”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34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100분의 70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 을 “1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 을 “200만원”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 을 “300만원” 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 를 “지식산업센터용지” 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을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의 규모”를 “1,000㎡ 이하 규모”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생 략)</p> <p>1. (생 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 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 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p> <p>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u>잡종재산</u>의 용도변경</p> <p>②(생 략)</p> <p>1. (생 략)</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생 략)</p> <p>4.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u>행정·보존재산</u>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u>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u>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까지</u>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u>행정재산</u>----- -----</p> <p>4. <u>일반재산</u>-----</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법」 제57조제1항----- -----</p> <p>3. (현행과 같음)</p> <p>4. ----- -----<u>행정재산</u>----- -----</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u>예산</u> <u>의결 전까지</u> ----- ----- ----- ----- -----<u>추가경정예산을</u> <u>의결하기 전까지</u>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수익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p> <p>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행정재산</p> <p>제18조(관리 및 처분)----- -----<u>행정재산</u>----- ----- -----</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u> ----- ----- ----- ----- -----</p> <p>② <u>행정재산</u>----- ----- -----</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u>행정재산</u>----- ----- -----</p> <p>② <u>행정재산</u>----- ----- -----</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u>행정재산</u>----- -----</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①----- -----<u>행정재산</u>----- <u>영 제21조</u> ----- ----- -----</p>

현 행	개 정 안
포함하여야 한다.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 <u>행정재산</u> ----- ----- ----- <u>행정재산</u>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u>행정재산</u> ----- ----- ----- ----- ----- ----- -----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u>법 제27조제4항</u> ----- ----- -----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u>일반입찰</u> ----- ----- <u>법 제27조제4항</u> ----- ----- ----- <u>행정재산</u> ----- ----- -----
제23조(<u>잡종재산 대부의 준용</u>)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u>일반재산 대부의 준용</u>)----- ----- ----- ----- -----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u>잡종재산</u></p> <p>제24조(연고권 배제)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 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아파트형공장</u>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③(생 략) 1~2(생 략) 3.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u>일반재산</u></p> <p>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일반산업단지</u>----- ----- 3.----- ----- ----- <u>지식산업센터</u>----- -----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삭 제>----- ----- -----

현 행	개 정 안
<p>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 ----- ----- ----- -----</p>
<p>④(생 략) 1~5(생 략) 6.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상시종업원----- -----경상북도 안----- -----</p>
<p>제30조(토석채취료 등)</p>	<p>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p>
<p>①~⑤(생 략)</p>	<p>①~⑤(현행과 같음)</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p>	<p>①----- --영 제35조----- ----- ----- ----- ----- -----</p>
<p>1.(생 략)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p>	<p>1. (현행과 같음) 가.----- -----기획재정부 장관----- ----- -----</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p>

현 행	개 정 안
<p>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u></p> <p>2. <u>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 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u></p> <p>3. <u>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u></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p> <p>①(생 략)</p> <p>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u>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u></p> <p>2. <u>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u></p> <p>3. <u>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u></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4(생 략)</p> <p>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u></p>	<p>----- ----- -----100분의 70 ----- <u>으로 한다.</u></p> <p>1. <삭 제></p> <p>2. <삭 제></p> <p>3. <삭 제></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1. <u>100만원</u>----- 2. <u>200만원</u>----- 3. <u>300만원</u>-----</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u>일반재산</u> ----- ----- ----- -----</p> <p>1~4 (현행과 같음)</p> <p>②----- ----- ----- ----- -----<u>일반재산</u>----- -----</p>

현 행	개 정 안
<p>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 재산</u>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생략)</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u>아파트형공장용지</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u>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u>,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u>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u>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u>농공단지</u>,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u>공장용지</u>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u>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u>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p>	<p>-----</p> <p>③-----<u>일반 재산</u>-----</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u>지식산업센터용지</u>-----</p> <p>-----</p> <p>-----</p> <p>-----</p> <p>-----</p> <p>-----</p> <p>-----</p> <p>④-----</p> <p>-----<u>일반 재산</u>-----</p> <p>-----</p> <p>-----</p> <p>⑤-----</p> <p>-----<u>일반재산</u>-----</p> <p>-----</p> <p>-----</p> <p>제39조(조성원가 매각)-----</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 ----- -----</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p> <p>-----</p> <p>-----</p> <p>-----</p> <p>2. ----- -----<u>지식산업센터</u> 안의 재산</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생략)</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기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p>	<p>----- 「건축법」 제57조 제1항----- ----- ----- -----</p>
<p>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p>	<p>4. ----- ----- ----- -----1,000m²이하 규모----- ----- ----- -----</p>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p>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연 락 처	(054) 950 - 6133